<i>y</i>

## 수출환어음등의 재매입을 위한 약정서

##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

		년	월	일
본인	(인)		인감다	조
주 소				

당행이 매입 관여한 수출환어음 등을 귀행에 재매입 의뢰함에 있어서 이미 귀행에 제출한 외국환거래약정서 이외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약정합니다.

- 1. 재매입을 의뢰한 수출환어음등에 대하여 귀행에 내규에서 정하여진 소정 기일 이내에 입금 또는 인수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원금은 물론 이자, 수수료 및 기타 제 비용을 귀행에 예치한 당행 명의의 예금계정에서 일방적으로 차기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.
- 2. 본 약정서의 기한은 이를 정하지 아니하나 귀행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.



